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7호
- 나. 발의자 : 김희걸 의원
- 다. 발의일자 : 2014년 11월 17일
- 라. 회부일자 : 2014년 11월 19일

2. 제안이유

-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“취하여야”를 “밟아야”로 하고 “4회”을 “네 차례”으로 하며
“명을”를 “요구를”로 하고 “1회”를 “한 차례”로 하며
“다음연도”를 “다음 해”로 하고 “비치하고”를 “보관하고”로 함. (안 제3조, 제9조, 제10조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- 나. 예산조치 :
- 다. 기타 :

5. 검토의견

가. 개요

-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,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.

〈조항별 신·구 대비표〉

조항 구분	현행	개정안
제3조 제1항 중	취하여야	밟아야
제3조 제2항 중	취하여야	밟아야
제9조 중	4회(분기별 1회)	네 차례(분기별 한 차례)
제10조 제3항 중	명을	요구를
제15조 제1항 중	1회	한 차례
제15조 제4항 중	다음연도	다음 해
제16조 중	1회	한 차례
제17조 제1항 중	비치하고	보관하고

나. 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은,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자치법규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, 그 입법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라 할 것임.
- 다만, 본 개정조례안에서 정비하려는 용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

현행의 용어를 유지하더라도, 그 해석상 어려움이 크지 아니하고 오히려 현행 조례의 입법 의도를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측면이 있음.

- 예를들어, 개정안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

‘다음 각 호의 조치를 “취하여야” 한다’ 를 ‘다음 각 호의 조치를 “밟아야” 한다’ 와 같이 개정하려는 것인바, 이 경우 오히려 현행의 용어가 보다 문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데 친숙한 측면이 있다 할 것임.

〈안 제3조 신·구 대비표〉

현행	개정안
제3조(책무)	제3조(책무)
①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여성폭력의 예방·방지과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<u>취하여야</u> 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밟아야 ----.
1.~2. (생략)	1.~2.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<u>취하여야</u> 한다.	② ----- ----- 밟아야 --.

○ 물론, 개정안 제17조 제1항과 같이, “비치하다”와 같은 일본식 한자어의 경우 “갖춰두다” 또는 “갖춰놓다”와 같은 순화어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¹⁾, 동 개정조례안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용어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, 개정안과 같이 특정 용어만을 전환할 경우 오히려 문맥이 부자연스러워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(예시. 안 제15조 제1항: ...<생략> 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. ⇒ ...<생략> 교육을 연 한차례 실시하여야 한다)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.

1) 법제처(2011)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제4판